

정관

희망래(來)일

2010.11.09. 제정
2012.02.01. 개정
2014.05.15. 개정
2017.02.01. 개정
2020.04.23. 개정
2021.06.0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희망래(來)일”(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우리 민족에게 잊혀진 대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륙적 세계관을 고취시켜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10-6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6.02)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역사, 문화, 언어 등 국내외 교육, 교류 사업 및 행사.(개정 2017.02.01)
2. 각종 성과물과 법인 사업 홍보를 위한 출판 사업
3.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 지원을 위한 대국민 후원 사업
4.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지속적인 체험 사업
5. 철도의 역할과 장점 홍보 사업
6. 국민 참여와 홍보, 국내외 관련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원 활동
7. 기타 본 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사업을 추가·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간행물 발간
2. 학술 강좌 등 대중교육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1년에 10만원 혹은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2. 후원회원은 1년에 5만 원 이상 후원한 개인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후원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 법인에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

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2020.04.23. 개정)
2. 감사 2인 이내
3. 이사 1인은 상임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제13조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임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상임 이사로 임명한다. 단, 이 경우는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법인의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 법인을 통할하여 제반사항을 집행·처리하며 사업에 있어서 대외적 대표권을 갖는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 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 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 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

다.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법인의 해산 및 합병
3. 임원의 해임
4. 지역조직의 해산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과 추대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 소집은 이사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온라인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

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비치해둔다.

③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본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본 법인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연간 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개정 2012.02.01)

제32조(재정)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제33조(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결산 및 이익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직원의 보수) 본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조 직

제38조 (기구)본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직책을 둔다.

제39조 (사무처)①본 법인의 사업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사무처는 행정실, 정책실 등 필요에 따라 집행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고 문)본 법인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41조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본 법인은 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발전을 위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 (기획위원)본 법인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2.01)

제43조 (지역조직)본 법인은 국내와 국외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지역조직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지역조직의 대표는 이사회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조직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조직은 본부에 지역조직의 사업추진내용, 실적 및 평가내용, 재정운영현황, 기타현황 등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때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개정 2012.02.01)

제45조 (청산인)본 법인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공식 카페 등에 게시하거나 모든 회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2010. 12.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2. 02 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5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2 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